

1996. 12.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안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안심사 보고서

1. 심사 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6.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6. 12. 6

다. 상정일자 : 제 20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 제4차 위원회 (1996. 12. 13) 상정 · 질의 · 답변 ·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수자원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소하천 정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 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점용료의 산정기준
- 점용료의 감면사항
- 점용료의 조정에 관한사항
- 점용료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 점용료의 반납에 관한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소하천 정비법이 '95. 1. 5일부로 법률 제4873호로 제정공포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충청북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도로부터 하천점용료 징수금액에 100분의 50을 교부받아 시 세입으로 확보하여 왔으나,

- 금번 소하천 정비법의 위임에 의하여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하므로서 소하천에 대하여는, 금번에 제정하는 본 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징수금 100%가 시 세입으로 전환 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더늦기전에 제정하여 시 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가 제정 된 후에는 하천점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원화 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점용료의 조정, 부과, 징수등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 ◦ 소하천 정비법이 '95. 1. 5. 제정공포 되었음.

관련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

☞ 답변 ◦ '95. 1. 5일 제정되었으나 시행규칙의 제정이 늦어지고,
도 조례제정등 준칙이 늦게 내려왔음.

[질의] ◦ 소하천부지 소유권은?

☞ 답변 ◦ 국유, 사유등이며 소하천에 대한 관리권이 시장 권한이므로,
전액 시수입 임.

[질의] ◦ 소하천 사용료의 예상 징수액은 얼마 정도인가?

☞ 답변 ◦ 년간 1천만원정도 예상함.

[질의] ◦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은 소득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나?

☞ 답변 ◦ 농지소득금액 산출기초에 의거 소득작목에 따라 산출하며,
조수익이 아닌 순수익으로 계상함.

(질의) ◦ 농업용수 사용료 징수는?

☞ 답변 ◦ 현재까지 일반 농가의 농업용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았음.

(질의) ◦ 본조례 제정으로 농업용수 사용료의 징수가 예상되는데?

☞ 답변 ◦ 농업용수를 $0.05 \sim 0.5 \text{m}^3/\text{sec}$ 사용이상 (즉 1일 4,300톤)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징수 대상이 현재까지 우리지역에는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붙임

○ 충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지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지1년으로 한다.

④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 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충주시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접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별지 1, 별지 2】 서식에 의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 (세입, 세출등)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소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9조 (부과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 면, 등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별령 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토지(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항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절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3/sec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면수대 적용</p> <p>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 m^3/sec까지 연액 10,000원 0.5 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p>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초과 여객선은 5톤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이하 유선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등급</th> <th>동력선</th> <th>무동력선</th> </tr> </thead> <tbody> <tr> <td>갑지</td> <td>월 100,000원</td> <td>월 50,000원</td> </tr> <tr> <td>을지</td> <td>월 60,000원</td> <td>월 30,000원</td> </tr> <tr> <td>병지</td> <td>월 20,000원</td> <td>월 10,000원</td> </tr> </tbody> </table> * 5톤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등급에 따른다 </p>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구 분	산 정 기 준
5. 지하수의 유수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 제외한다.</p> <p>제4항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7. 토석, 사력의 채취	<p>가. 당해년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격의 5/100

구 분	산 정 기 준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공유수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 로 그 원자재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2.5 /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점용료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
5.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의 경우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비율

【별표 3】

점용료 조정 산식(제4조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00+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00+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00+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00+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0.00+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00】